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

제정 2009. 11. 11 조례 제1058호 일부개정 2015. 1. 9 조례 제1421호(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 일부개정 2015. 7. 28 조례 제1479호(양성평등 기본 조례) 일부개정 2015. 11. 6 조례 제151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육성·지원과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1. 6]

- 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5. 11. 6〉
 - 1. "범죄행위"란 타인의 생명, 재산,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다.
 - 2. "시민봉사단체"란 범죄행위 예방활동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시 민단체를 말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, 경찰서, 세무서 등으로부터 승인 (등록)된 단체에 한정한다.
 - 3. "자원봉사활동"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4. "사업"이란 용인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말한다.
- 제3조(시의 책무) 용인시(이하 "시"라 한다)는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 심신장애인 등(이하 "사회적 약자"라 한다)를 위한 시책 발굴, 시민봉사단 체의 육성·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 다. 〈개정 2015. 11. 6〉

- 제4조(시민봉사단체의 요건)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민봉사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〈개정 2015. 11. 6〉
 - 1. 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.
 - 2.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3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 - 3.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지속해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.
 - 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5조(시민봉사단체의 의무) 시민봉사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 망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등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. 〈개정 2015. 11. 6〉
- 제6조(사업의 보조) ① 시장은 시민봉사단체가 지역사회 법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 11. 6〉
 - 1. 등굣길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취약지역 순찰
 - 2.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위험요소 통보 및 범죄 신고
 - 3. 비행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
 - 4.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우범지대 치안봉사
 - 5.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및 교통안전 교육
 - 6. 교통 혼잡지역 교통관리 및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 봉사
 - 7.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보조사업의 지원 절차,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은 「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 〈개정 2015. 1. 9, 2015. 11. 6〉
- 제7조(협의회 설치) ① 지역사회의 법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용인시지역치안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 〈개정 2015. 11. 6〉

- ② 협의회에서 처리할 안건상정 및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관련 국장급·과장급 등으로 구성하는 용인시지역치안실무협의 회(이하 "실무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 〈개정 2015. 11. 6〉
- 제8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.
 -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위원은 용인시장, 용인시의회의장, 용인동부경찰서장, 용인서부경찰서장,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, 용인소방서장, 용인세무서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 〈개정 2015. 11. 6〉
 - 1. 사회적 약자의 복지 분야 전문가
 - 2.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
 - 3. 행정・교육・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또는 대표
 - 4.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
- 제9조(협의회의 기능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〈개정 2015. 11. 6〉
 - 1.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범죄예방 정보 제공, 사례관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(공동)사업에 관한 사항
 - 3.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- 4.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, 시민봉사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협의회는 정부, 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 11. 6〉
- 제10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.

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1. 6]

- 제11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 11. 6〉
 - 1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본인이 원하는 경우

[제목개정 2015. 11. 6]

- 제1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
 - 4.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
 -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-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11. 6]

- 제12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 -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. 〈개정 2015, 11, 6〉

- ③ 혐의회의 안건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에 한정한다. <개정 2015. 11. 6>
-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 11. 6〉
- 제13조(사무처리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용인동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용인동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하다. 〈개정 2015. 11. 6〉
 - ②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·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지원 등)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5. 1. 9 조례 제1421호,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「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"를 "「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② 부터 ② 까지 생략

부칙〈2015. 7. 28 조례 제1479호, 양성평등 기본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'성평등 정책 시행계획'은 이 조례에 따른 '양성평등정

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

책 시행계획'으로 본다.

- 제3조(성평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'용인시 성평등위원회'는 이 조례에 따른 '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'로 보고,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'용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'은 이 조례에 따른 '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'으로 본다.
- 제4조(여성발전기금의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'여성발전기금'은 이 조례에 따른 '양성평등기금'으로 본다.
- 제5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·절차 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
- 제6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내지 ② 생략
 - ③ 「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여성발전기본법」"을 "「양성평등기본법」"으로 한다.

부칙〈2015. 11. 6 조례 제1511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